

●기획재정부고시 제2023-41호

2023년 5월 1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해 관세법 제 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11월 15일

기획재정부장관

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

1. 부과 내용

가. 부과대상 공급국 : 이집트

나. 부과대상 물품 :

○ 백시멘트(White Portland Cement)

○ 관세품목분류번호 : HSK 2523.21.0000

다.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

공급국	공급자(수출자, 생산자)	잠정 덤핑방지 관세율(%)
이집트	로얄시멘트(Royal El Minya Cement Co.) 및 그 관계사와 그	72.23%
	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	
	그 밖의 공급자	72.23%

라. 부과기간 : 2023. 11. 15. ~ 2024. 3. 14. (4개월)

마. 기타 행정사항

○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

2. 부과이유

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2023년 9월 27일 그 결과를 별첨과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.

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위 부과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<별첨 자료 게재 안내>

아래의 별첨 자료는 [기획재정부 홈페이지(www.moef.go.kr)/법령/훈령·고시/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]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.

1.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조사보고서(게재 생략)
2.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 예비판정의결서(게재 생략)